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|
| 1권 7~7p 01 학교체육진흥법 | 문제-본문 | 01 학교체육진흥법(시행 2025. 1. 1.) | 01 학교체육진흥법(시행 2024. 3. 24.) |
| | | 수정 사유 | 시행일 오류 |
| 1 7~7p 01 학교체육진흥법 표 | 문제-본문 |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(제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사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.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.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사로서의 자질 · 복무 태도 · 학생의 만족도 |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(시행령 제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사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.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.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사로서의 자질 · 복무 태도 · 학생의 만족도 |
| | | 수정 사유 | 법령명 추가 |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